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심의 • 의결

안건번호 제2022-011-068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(주)ㅇㅇ건설 (사업자등록번호:)

서울특별시

대표자

의결연월일 2022. 6. 22.

주 문

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과 태 료 : 1,000,000원

2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3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이 유

1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피심인은 인천광역시 번지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다.

2. 사실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 접수('21.4.28.)된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(법률 제16930호, 이하 "보호법"이라 함)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('21.4.28.~5.17.) 및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가. 행위 사실

피심인은 2019년 10월부터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공사 현장 외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(총 6대)를 설치·운영하고 있으나, 신고 당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피심인은 사실조사 중 법에 맞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법 위반상태를 시정하였다.

3. 위법성 판단

가. 관련 법령

보호법 제25조제4항은 "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(제1호), 촬영 범위 및시간(제2호),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(제3호)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(제4호)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나. 위법성 판단

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면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.

4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.12.13. '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'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CCTV 최초 설치 시에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나 노후화로 인해 망실되었고, 인지즉시 시정하였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제인증(ISO 27001)을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해 주기를 요청하였다.

5. 처분 및 결정

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[별표 2] 과태료 부과기준(이하 '과태료 부과기준')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기준금액

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적용한다.

< 과태료 부과기준 2. 개별기준 >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 : 만원)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거.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4항제3호	200	400	800

나. 과태료의 가중

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. 라.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1. 일반기준
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과태료의 감경

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며,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1. 다.에 따라 기준금액의 50%인 100만원을 감경한다.

< 과태료의 부과기준 1. 다. >

1. 일반기준
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- 1) 위반행위가 시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 200만원에서 50%를 감경한 100만원을 부과한다.

<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>

과태료 처분	과태료 금액 (단위:만원)				
위반 조항	처분 조항	기준 금액(A)	가중액 (B)	감경액 (C)	최종액 (D=A+B-C)
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의 설치·운영 제한)제4항	제75조제4항제3호	200	_	100	100

[☞]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, 100분의 20을 감경함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)

6. 결론

피심인이 보호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2022년 6월 22일

- 위원장 윤종인 (서명)
- 부위원장 최 영 진 (서 명)
- 위 원 강정화 (서명)
- 위 원 고성학 (서명)
- 위 원 서종식 (서명)
- 위 원 염흥열 (서명)
- 위 원 이희정 (서명)
- 위 원 지성우 (서명)